

# 즉시상각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 201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①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 ·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②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③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 31[즉시상각의 의제] ⑥, 소득령 § 67[즉시상각의 의제]⑦]

##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 31 [즉시상각의 의제] ⑥, 소득령 § 67 [즉시상각의 의제] ⑦]

2019.12.31.0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021.02.17.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p>① 삭제 [2019.02.12]</p> <p>② 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개정]</li><li>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개정]</li><li>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개정]</li><li>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 기계 · 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li><li>5. 그 밖에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02.12 개정]</li></ol> <p>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개별자산별로 <b>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b> [1998.12.31 개정]</li><li>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b>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b> [2010.12.30 개정]</li><li>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li></ol> <p>④ <b>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b>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12.31 개정]</li><li>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12.31 개정]</li></ol> <p>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p> <p>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li><li>2. 영화필름, <b>공구(금형을 포함한다)</b>,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12.31 개정]</li><li>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12.31 신설]</li><li>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li></ol> <p>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p> <p>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b>자산 · 부채의 평가</b>]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9.02.12 개정]</p>	<p>① 삭제 [2019.02.12]</p> <p>② 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개정]</li><li>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개정]</li><li>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개정]</li><li>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 기계 · 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li><li>5. 그 밖에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02.12 개정]</li></ol> <p>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개별자산별로 <b>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b>[2020.02.11 개정]</li><li>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b>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b> [2010.12.30 개정]</li><li>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li></ol> <p>④ <b>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b>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12.31 개정]</li><li>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12.31 개정]</li></ol> <p>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p> <p>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li><li>2. 영화필름, <b>공구</b>,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02.11 개정]</li><li>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12.31 신설]</li><li>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li></ol>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1.02.17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021.02.17 신설]</li><li>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021.02.17 신설]</li></ol> <p>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b>자산 · 부채의 평가</b>]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1항을 적용한다. [2019.02.12 개정]</p>